

## 김/김자반 원초 수입 관련 법령 및 절차

### □ 상표 및 특허출원(지적재산권 보호)

- 식품 사업은 인도네시아 지적 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상표권, 특허권, 영업 기밀 보호 관련법의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.
  
- 관련법령
  - 상표권 관련 법령 :Undang-undang No 15 Tahun 2001
  - 특허 관련 법령: Undang-undang No 14 Tahun 2001
  - 영업 기밀 보호 관련 법령: Undang-undang No 30 Tahun 2000
  
-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식품제조기계, 식품포장기계 등의 제작 기술이며,
  
- 제품의 생산 혹은 제조기법, 가공방법(조리법), 판매방법(거래처, 가격) 등은 영업 기밀 보호 관련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해당 보호는 계약된 당사자 사이에서만 보호가 가능하며 일반 대중을 상대로는 적용이 힘듭니다.
  
- 상표와 그의 디자인은 상표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, 인도네시아 법무인권 부에 상표 등록을 하실 수 있으며, 그를 위한 절차는 이하와 같습니다.
  - a. 출원
  - b. 방식심사
  - c. 출원일(tanda terima pendartaran)

- d. 실체심사 (약 9개월 소요)
- e. 등록결정
- f. 출원공고
- g. 상표등록증 발행

- 상표등록은 대략 12~15개월이 소요됩니다. 상표는 어떤 물품인지에 따라서 클래스 구분이 이루어지며, 해당 구분에 한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□ 김/김자반 원초 수입 관계 법령 및 절차

- 관련법령

- 해양수산부장관령 2014년 제 46호  
Peratur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nomor 46/Permen-KP/2014
- 해양수산부장관령 2013년 제 52A호  
Keputusan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nomor 52A/KEPMEN-KP/2013

- 해당법령에 따르면, 생명주기를 가진 수생하는 것들의 모든 수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, 따라서 김/김자반 원초 또한 수산물에 해당합니다.
- 수산물 관할부서는 해양수산부(DKP)이며, 수산양식업은 해양수산부 산하 수산제품 가공 및 마케팅청이 관할부서입니다.
-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API-P혹은 API-U 를 소지하여야 하고, 해양수산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또한, 수산물 제품의 수입 허가 (Suratalzin Pemasukan Hasil Perikanan)도 의무사항입니다. 수입허가의 발급은 수산제품 가공 및 마케팅청의 관할입니다.

- 인도네시아로 수산물 수입은 하기 3가지 분류로만 가능
  - API-P 소지자: 가공 목적으로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
  - API-U 소지자: 가공 없이 제 3자에게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
  - 대사관 등의 정부 기관의 내부 소비 목적이거나, Promotion등을 목적으로 수입 하는 경우

1) API-P 소지자 (46/Permen-KP/2014 제 6조 3항 에 따라):

- a. SKP 그리고 PMTT,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서 (HACCP / ISO 22000) 사본
- b. 원산지로부터의 수출 증명서 사본
- c. 해양수산부의 수산물가공장소(UPI) 확인서 혹은 처리시설 소재지확인서
  - \* 52A/KEPMEN-KP/2013 52조A에 따르면 UPI는 급속냉동시설 (-18 C) 을 갖추어야 하고, 냉장시설을 영하 18도, 그 이하의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함.

2) API-U소지자 (46/Permen-KP/2014 제 6조 4항에 따라):

- a. SKP 사본
- b. 원산지로부터의 수출 증명서 사본
- c. 창고소재지 증명서

- 김/김자반을 포함한 수산물은 쿼터제이며, 어류 및 수산물에 대한 쿼터 신청 절차 및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a. 신청 서류를 지방 수산부(Dinas Provinsi Perikanan)에 신청하여 추천서 발급
- b. 해당 추천서를 해양 수산부(Kementerian Kelautan dan Perikanan)에 쿼터 신청 \*쿼터 신청 시 생선 그림과 수입량을 기재한 서류 추가 필요
- c. 신청서류
  - 시장(구장)의 추천서
  - 무역등록증(TDUP), 생선 임시 검역증(IKIS), 세금공제서(SKP)

무역판매업허가증(SIUP), 세무번호(NPWP)

- 레스토랑 및 호텔에서의 주문내역서
- 자카르타 주정부 추천서
- 해양수산부에서의 수입승인서

○ 김/김자반 원초를 수입하기 위해 필요 서류와 통관 절차는 이하와 같습니다.

- a. 수입자 등록 번호발급
- b. 수산물의 검역목적 관련 서류 제출
  - 위생증명서 (Health certificate )
  - 원산지 증명서 (Certificate of origin )
- c.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쓰인 라벨 혹은 서류 동봉(학명 및 교역명, 수량 혹은 용량 , 수입업자의 주소와 이름)
- d. 수입 허가 신청
  - SKP 와 PMMT(Program Manajemen Mutu Terpadu )사본
  - HACCP 적용 증명서
  - 또는 GMP-SSOP 사본과 HACCP / ISO 22000
  - 원산지에 등록된 수출업자 증명서
  - 지역정부기관의 추천서
  - 국제수역사무국 (OIE) 회원국이 아닌 곳에서 수입되는 경우 이거나, OIE 회원국에서 새로운 종류의 수산물 혹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수입되는 경우, 수산물의 위험분석서 첨부
- e. 통관 절차

도착전	관세항구도착	하역	수입관세및제세	화물 검사	인도	인수
도착 24시간 이전에 관세청에 통보	관세신고서 제출	관세청 지정지역에 하역	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	물품의 서류 및 실물 검사	관세청지역으로 물품인도	관세청으로부터 물품인수

- 도착 전 : 운송수단이 인도네시아 관세지역으로 진입하기 최소 24시간 이전에, 운송사는 관세청에 운송수단의 도착예정을 통보해야 함.
  - 관세 항구에의 도착 : 운송수단이 도착하면 수입업자는 선적된 모든 화물 및 부속물과 관련하여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함.
  - 수입물품의 하역 : 수입된 물품은 조사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 세관지역 내 지정된 장소에 하역할 수가 있음.
  - 수입관세 및 제세의 납부 : 수입업자는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, 제세 및 부가세 등을 계산한 수입신고서(PIB)를 준비함.
  - 화물 검사 : 수입업자가 PIB를 제출하면, 관세청 직원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 및 상업송장, 포장명세, 수입관세 및 제세 납부 증거자료 등의 첨부문서들을 검토함.
  - 수입물품의 인도 : 관세청이 승인하면 수입된 물품이 인도 됨.
  - 물품의 인수 : 물품은 하역일로부터 최장 2개월의 기간 동안 항구의 임시창고(창고 혹은 노상장소)에 보관될 수 있다. 그러나 Tanjung Priok 항의 경우, 임시보관의 최장기간은 1개월임.
- 또한, 검역의 목적으로 수산제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관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원산지 국가의 위생 증명서
  - 원산지 국가의 인가된 시험기관으로부터의 수산제품이 미생물 오염, 오염물질 잔류량, 기타 유해성 화학물질 등의 오염이 없으며, 냉동제품의 경우 제품의 순중량이 95% 이상이며, 수산제품이 관련 규정 및 법규에서 정하는 품질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시험 성적서
  - 식품 라벨링 및 광고에 관한 설명서
  - Good Aquacultural Practice (GAP) 인증서